

第11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請願審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日 時 1992年1月20日(月) 14時32分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鍾路區舊基洞73,74番地住宅組合事業早速施行에 대한請願(繼續)
2. 組合宅地一圓에 대한都市計劃變更禁止要請에 대한請願(繼續)

審査된案件

1. 鍾路區舊基洞73,74番地住宅組合事業早速施行에 대한請願(繼續) 1面
2. 組合宅地一圓에 대한都市計劃變更禁止要請에 대한請願(繼續) 1面

(14時32分 開議)

○委員長 朴禹信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11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請願審查特別委員會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선 成員이 되었으므로 請願審查特別委員會 第3次 委員會의 開議를 宣布합니다.

1. 鍾路區舊基洞73,74番地住宅組合事業早速施行에 대한請願
2. 組合宅地一圓에 대한都市計劃變更禁止要請에 대한請願

(14時33分)

○委員長 朴禹信 議事日程 第1項 鍾路區舊基洞 73,74番地 住宅組合事業 早速施行에 대한 請願과 議事日程 第2項 組合宅地 一圓에 대한 都市計劃 變更禁止 要請에 대한 請願을 일괄 上程합니다.

지난 17日 本 委員會에서 請願人의 의견 진술과 關係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미흡하여 그 답변을 계속하겠으며 먼저 玄孝善委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質의·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本 委員會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 질서있게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 委員이 말씀하시면 그치고 나서 다른 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請願審査에 있어서 각

委員께서는 공된 마음으로 사사로운 것을 배제하고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게 잘 알 수 있게 서로가 말하여 주시기 부탁하면서, 또한 關係공무원은 정확하고도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委員會條例 第5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먼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本 會議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住宅課長님! 나오셔서 玄孝善委員님의 평창동 건축허가전에 대한 質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韓吉洙 住宅課長입니다.

지난 金요일날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산 일대의 경관을 저해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이 있어 KBS나 동아일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건에 맞춰서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해서 사업승인이 반드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평창동에 있는 562번지 일대의 땅은 한신부동산이라는 데에서 토지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의 지목을 대지로 만들어

서 팔아먹었습니다. 선의의 취득자들이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금 건축허가가 안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東亞日報나 KBS도 景觀保存의 차원에서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禹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委員 질의하십시오.

○玄孝善委員 한마디 묻겠습니다.

89年 8月 24日 보완지사가 있었는데 아시고 계시죠? 民營住宅 입지심의 신청서류 보완통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청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빙서류가 있느냐, 그것과 진입도로 표시 상세도, 토목관계 도면, 최근 촬영한 현황사진 이걸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보완을 했습니다.

○玄孝善委員 몇일 날짜에 들어왔습니까? 보완서류가 8월 30일까지 안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왔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언제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고 89年 8月 30日 취하원을 요청해서 89年 8月 30日 다시 취하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玄孝善委員 왜 그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취하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89年 8月 30日 취하원을 요청해서 취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흥하이츠빌라라고 해서 거기서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도 89年 8月 30日날 취하하면서 같은 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玄孝善委員 89年 8月 30日날 취하하고 서류를 바꾸어 넣었다는 얘가지요? 바꾸어 넣었는데 90年 6月 27日 입지심의 신청에서 보완지사를 住宅課에서 내리신 겁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예, 도시경관보존을 위한 개발조정위원회에서 90年 6月 23日 綠地保存 차원에서 개발유보가 최선이나 제한적

개발은 허용한다, 그래서 제한적 개발에 맞도록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玄孝善委員 지금 신청인들을 보니까 제한적 개발을 하라고 해서 2부능선 이내로 제한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신청인들이 여기에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89年 8月 30日 교체를 해서 집어넣고 6個月 후에 2부능선 이내로는 해줘도 괜찮다는 공문이 아닙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그렇지요. 제한해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얘가지요.

○玄孝善委員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 및 녹지보존 차원에서 개발유보가 최선이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할 경우라도 경관훼손이 우려되므로 2부능선 이내로 제한해 허가를 해주라고 한 공문 아닙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여하튼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은 제한적으로 최소한으로 개발해서, 다시 圖面이나 關係書類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玄孝善委員 2부능선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제출을 안 했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제출했지요.

○玄孝善委員 그러면 그때 왜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걸 해주려고 하는 과정 중에 엄청난 社會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해서 이걸 못해 준 거예요.

○玄孝善委員 제가 볼 때는 89年度에書類를 제출해서 이게 시정지사가 내려간 게 8월달이니까 6個月이 걸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89年度 2월달에 신청했는데 6개월씩이나 걸려서 시정통보가 나갔습니까?

이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關係部署와 協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玄孝善委員 시간제한이 전혀 없군요? 그리고 89年度 8月 30日 당시 신청을 해서 6개월만에 시정지사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6개월 8개월씩 걸립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관계부서 협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걸립니다.

○玄孝善委員 90年度 6月달에는 언론에서 시끄럽게 나올 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그렇지요. 그래서 90年 10月29日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玄孝善委員 그러면 90年 8月달에 10月 17日까지 敷地買入 현황보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住宅課長 韓吉洙 그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玄孝善委員 이게 법에 하자가 없으면 언론이 떠든다고 해서 新聞과 매스컴에서 떠든다고 해서...

○住宅課長 韓吉洙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輿論이 높으니까 그것도 참작을 해야지요. 그 여론을 완전 무시하고 해줄 수는 없지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萬信 鄭鍾九委員 말씀하십시오.

○鄭鍾九委員 조금 전에 玄委員님께서 물어보신 질문 중에 입지심의 관계에 있어서 입지심의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입지심의를 한다고 해서 안될 게 되고 될 게 안되고 하는 게 아니라 입지심의를 열려고 했는데 비판여론이 거세어서 그것마저 열지를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시끄럽지 않았으면 입지심의만 했으면 그것이 무조건 해주려고 했던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韓吉洙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는 저희가 그 분들의 의견, 민원을 수렴하려고 입지심의를 개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들이 참여하여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입지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건의하는 사항인데 이걸 기관장이 받아들이면 좋고 안받아들여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입지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토목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事業承認을 해주는 겁니다. 사업승인이 나와 최종적으로 建築許可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체는 하시타시피 전부 정상

적으로 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부 垆地도 있습니다마는 田이고 林木이, 양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林木이 있는 상황 등등 해서 사실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형질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해주면 형질변경을 해주는 그런 것과 가름되는 法的인 특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질변경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사업승인을 내어주면 그런 절차를 입지심의나 그런 데에서 완전히 거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形質變更 허가가 建築許可나 이런 것처럼 따로따로 되면 간단하겠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려니 관계기관들끼리 협의가 사전에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鄭鍾九委員 만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문제가 먼저번 과장님 답변에 검찰이나 감사원, 그리고 자체 감사 등 관계기관의 감사를 다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현재 地方自治가 30年만에 부활되어 국민의 代表機關이 된 저희한테까지 이런 문제가 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시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들끓고 난리가 나다보니 서울地方檢察廳에서 검사 5분이 무려 2개월간을 수사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파헤쳤고, 本廳 감사과, 조사과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감사하고 파헤쳤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잘못이 있거나 직무태만이 있었다면 벌써 몇사람의 신상에 나쁜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도 그런 지적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만 東亞日報나 KBS만 한 게 아니라 건덕이나 금강빌라나 그 일대 과거부터 허가를 내어준 것을 저희들이 서류를 한 트럭이나 갖다줬습니다. 전부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지껏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議會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산 일대 경관조정을 위해서 市立大에 용역을 줬는데 그 결

론이 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선 議會에다 의견을 구하려고 議會에 와있어요. 여기에서 議決을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아마 거기에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鄭鍾九委員 選舉철이 가까와져서 다수의 힘을 역이용해서 하려 한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그런 생각은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議會에 용역을 준 결과와 와있으니까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내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일환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鄭鍾九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禹信 李憲九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住宅課長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실 住宅課長님한테 民願人들의 請願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거니까 우리 서로 화합하는 마음에서 진실된 얘기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住宅課長 韓吉洙 예, 저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憲九委員 현재 평창동, 부암동 일대에 이번 本 請願과 같은 동일한 택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住宅課長 韓吉洙 집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내무부에서 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입지심치가 들어왔는데 3번, 4번, 5번째 반려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하나 있고 건덕주택이라고 건덕빌라에서도 지금 KBS의 그 땅 위에 그 근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입지심의 신청을 했다가 안된다고 저희가 반려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한 건이 수건이 있습니다. 지금 총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李憲九委員 반려하고 실제로 이런 請願人과 같은 경우가 현재 區廳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계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반려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請願으로 봐서 그 당시에 京鄕新聞인가에 대서특필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과장님같은 경우 에? 이 경우를 허가해서 지금쯤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住宅課長 韓吉洙 윗분들이 결심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李憲九委員 아까 關係 課長님들이 關係對策會議나 관계기관대책회의 비슷하게 관계과장이 입지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입지심의를 했는데 많은 조건들이 들어왔습니다.

公園綠地課는 公園綠地課대로, 土木課는 土木課대로, 下水課는 下水課대로, 建築課는 建築課대로, 水道事業所는 水道事業所대로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한을 하다보니 이 사람들 組合員들의 타산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각 課마다 결론내린 것에 이결해줘야 되겠느냐, 해주지 말아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것은?

○住宅課長 韓吉洙 그러니까 몽땅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나왔지요.

○李憲九委員 그러면 제한적으로 해준다면 지금 건덕빌라가 7부능선 위까지 지었는데 지금 현재 73, 74번지 일대는 고도를 예를 들어 3천평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고 해서 우리가 1천평은 그냥 기부채납을 하고 이 밑의 보이지 않는 데에 2천평 정도를 집을 지을테니까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면 허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앞으로 北漢山 경관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나오면 지금 현상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議員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市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가 나면 그건 가능할 겁니다.

○李憲九委員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萬信 金憲中委員, 말씀하세요.

○金憲中委員 鍾路區廳에서 6月 27日 입지 심의를 할 때의 會議錄이 있지 않습니까? 監查委員長님, 委員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것이...

○住宅課長 韓吉洙 몇年度 언제입니까?

○金憲中委員 90年 6月 27日?

○住宅課長 韓吉洙 90年 6月 27日은 입지 심의를 안 열었는데요.

○金憲中委員 그런데 여기 會議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組合會議錄인가요? 이 조합회의록으로 한번 문졌는데 조합회의에서 北漢山을 그렇게 파헤치지 않는 조건부로 모든 工事を 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맨나중에 끄트머리는 결과적으로 區廳에서 내용인즉 임원들이 말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항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하고 이것이 참고서류로 붙은 거죠?

지금 의아스러운 것은 아직도 저는 완전한 파악을 하지 못해서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는 결론조차도 못내려서 물어 보니까 서류가 제일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11개 서류가 서울시나 진정서 처리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 다만 오늘 갖다놓은 서류를 여러 委員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鍾路區廳에서 한 회신을 보면 어떻게 되었던 경관을 해치는 範圍內에서는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다. 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뿐이지 이 10個 서류 중에서 한가지라도 이번에 귀하들이 제출한 몇몇의 보완서류 등에 의해서 몇일 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조치를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맞습니다.

○金憲中委員 請願인이 낸 것은 어제 보고서 이렇게 行政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문의 근거를 전부 따져보니까 鍾路區廳에서는 응답한 것이 해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을 해치는 範圍內에서는 앞으로는 審議하겠습니

다 했지, 맨 나중의 공문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8月 24日 공문에도 일체의 建築행위 등이 통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請願인들이 낸 서류를 보면 애절하고 그 서민들이, 庶民職場인들이 다들 집을 지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통제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檢討해 보니까 鍾路區廳에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고 심지어는 서울시까지도, 입지심의회에서도 통과가 됐다. 엇그제 그 분들의 얘기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副廳長 결재까지도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다른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이 11個 공문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간 것입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맞습니다.

○金憲中委員 그렇다면 이게 안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문제가 아닌데 鍾路區廳에서 단독으로 한다고, 주택정비과 모계장님이 와서 우리가 議決하더라도 안된다. 서울시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참고밖에 안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도 請願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여러가지로 이쪽 저쪽으로 肯定的인, 否定的인面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檢討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意見を 붙여서 하더라도 참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그것은 아니죠. 지금 北漢山 景觀保存에 따른 용역을 준 結果가 지금 議會에 와있거든요. 1案, 2案, 3案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民願을 收斂할 수 있는 案을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市에 올려가지고 本廳에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그것이 可決만 되면 민원이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金憲中委員 그러면 용역을 쥐가지고 회신은 것을 대충이라도 요점사항이라도 비밀사항이 아니면...

○住宅課長 韓吉洙 1안, 2안, 3안을 도시정비과장이 금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왔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못했을 겁니다, 委員님들께 비밀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朴禹信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한참 되었어요. 도시정비국장이 와서 설명을 해서 다 아는 사항입니다.

○住宅課長 韓吉洙 그러면 委員님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金憲中委員 우리가 힘들어서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의미없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왕에 우리가 建議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느냐...

○住宅課長 韓吉洙 그것하고는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것 하고 의견일치하고 해서 잘 처리되면 그게 많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죠.

○金憲中委員 알았습니다.

아까 李憲九委員님 말씀과 같이 課長님 기분도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겠지만 원만한 성격으로선 이렇게 오늘까지 나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은 관과 민이 합심을 해서 되게 되면 되는 방향으로 안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質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禹信 예, 玄孝善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孝善委員 玄孝善입니다. 한마디 묻겠습니다.

90年 6月 27日 두군데 住宅組合에 신청 도서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 9日부로 내려갔습니다. 반송하신 일 있죠?

○住宅課長 韓吉洙 맞습니다.

○玄孝善委員 그것은 東亞日報 件인데 7부능선 이내로 개발을 해주겠다고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만 바로 本廳에서 綠地保存 차원에서 개발유보가 최선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주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주려고 거기에 맞도록 다시 再計劃해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玄孝善委員 7부능선 이내로 신청인들이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다시 보안을 해서 이것을 냈죠.

○玄孝善委員 냈으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해줄려고 보니까...

○玄孝善委員 그게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7부능선 이내로 축소해서 설계를 해오면 해주겠다고...

○住宅課長 韓吉洙 해줄려고 입지심의까지 개제한 것입니다. 안해주려고 개제한 것이 아니고 해주려고 개제한데 바로 이어서 약속이나 한듯이 여기 저기서 신문에 터지고 하니까 못해준거예요.

○玄孝善委員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서민들에게 7부능선 이내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輿論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韓吉洙 어른때문에 못해주는 것은 많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禹信 예, 李憲九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우리 課長님! 장시간 서 계셨는데 잠깐 뒤에 가서 앉아 계시고 전임자 박동운 과장님이 와계시니까 그 분한테 質疑 한번 해보십시다.

○委員長 朴禹信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課長님 잠깐 쉬세요.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李憲九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委員 박동운 과장님이 제실 때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아서 몇가지를 質疑하겠습니다.

첫째는 89年 3月경에 사전 입지심의로 진입로 6m를 확보하면 許可를 내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없는 돈을 추렴해 가지고 거금 3억원을 들여가지고 약 한 평 반 정도 땅을 사가지고 길을 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憲九委員 제가 말씀드릴 것이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3억원 돈을 들여가지고 길을 만든 사실을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민영주택 事業計劃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진입로의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청을 접수할 수 없노라 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李憲九委員님의 조금 전에 보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입로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뜻이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문제가 크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6m 길만 내면 입지심의회에 들어가서 바로 허가가 날 줄 알고서 이것을 했는데 區廳에서는 입지심의회를 하기 전에 허가심의 요건이 되지 않으니까 반려가 된 것이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이 書類의 경위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취하했다가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이 89年 8月 30日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수해서 형식적인 요건이 우선 맞지 않기 때문에 本人들이 취하를 하거나 반려가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한 것이 89年 8月 30日입니다.

○李憲九委員 그런데 8月 3日경에 3억원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자꾸 난 이름을 잘 몰라 가지고, 89年 11月 경에 당시 도시정비국장인 김용준氏가 지금 서대문구청 시민국장으로 가신 분이죠? 그 분이 일주일 내에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내에 처리해 준다는 것이 許可를 내주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가부간의 그 회신을 주겠다는 얘깁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書類가 들어오면 먼저 住宅課長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서류가 해당되는 과가 구

청같은 경우에 한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10개 과에 서류검토를 요청합니다. 각 課에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검토결과를 바로 입지심의하고, 그 다음에 토목심의하고 건축심의하고 事業承認을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그 당시의 局長님이 말씀하셨던 처래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마도 협의된 서류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입지심의委員會를 개최하도록, 관제절차를 밟아주겠다는 뜻이지, 局長님이 혼자서 이 사항을 決定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자기가 西大門區廳으로 전근을 가면서 후임자에게 이 업무를 이양하였으니 염려말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염려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이 사항에 대한 관련 경위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등에 대한 사항이 後任者한테 인계가 되었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李憲九委員 그렇다면 그 당시에 住宅課長이던 朴課長님이 3日 이내 또는 7日 이내로 곧 許可가 날듯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승인의 단계가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알고 있는 주관과장이 3日 이내 이것을 해준다는 그러한 소리를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민원인들의 얘기는 허위이군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글썩요. 그것을 제가 허위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의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관과장이 3日 이내 해준다는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요.

이 분들의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區廳에서 계속 하지 아니 하고 市廳으로 이관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아까 住宅課長님께서 말씀 안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양쪽에서 관련서류가 들어오고 그 서류를 관계과의 審議, 協議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여론이 북한산 경관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등으로 해서 상당히 여론화되면서 市長님께서 90년 초에 구기동 일대를 순시를 하셨습니다.

순시를 하시는 과정에서 구기동 일대에 대해서 綠地保存 차원에서 형질변경이랄지, 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市의 자문을 받고 짓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90년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鍾路區에서 市에다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開發調整委員會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고 자문결과가 내려오고 다시 거기에 대한 質疑가 있었고 回信이 있었고 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李憲九委員 서울에서 다시 鍾路區廳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 해 10월에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건부로 통고가 되었다는데 조건부가 무엇입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아까 住宅課長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公開會議가 아니고 非公開會議입니다. 그래서 입지심의라는 것이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의견을 내고 그것의 결재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機關長님의 결심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입지심의 위원회를 분명히 10월 29일 열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의견은 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朴銅雲과장님!

區廳長 사건으로 본인이 이 件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결재서류가 올라오면 즉시 결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金振昱區廳長이 아닌 배문환區廳長이 현직에 있다면 이것은 결재가 되어서 벌써 집을 짓지 않겠느냐, 소견이 어떻습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廳長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보기 곤란한 것이 관계과의 의견이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의 서류화 되어서 결재단계에 올라가거든요. 한 단계에서 여하튼 간에 내부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廳長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李憲九委員 그렇습니까? 91년 5월 24日 副廳長, 도시정비국장 면담시에 2년 반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李憲九委員님!

제가 住宅課長을 90년 11월 6일까지 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렇습니까? 이것은 현 주택과장한테 여쭙 봐야 되겠네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약간의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2日 市長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市에 자문을 의뢰해서 6월 23日 市에서 자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綠地保存 차원에서 개발유보가 최선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한다 하면서 KBS의 경우는 2부능선, 東亞日報의 경우는 7부능선의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서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2부능선하고 7부능선의 개념을 우선 정립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숫자인데 능선의 꼭대기를 어디서 볼 것이냐 내지는 밑에 점을 어디다 보느냐에 따라서 2부하고 7부의 선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장을 보셨겠습니까만 대지경계선을 하한선으로 볼 것이냐, 도로경계선을 하한선으로 볼 것이냐 능선도 최고 고봉을 고산으로 볼 것이냐 주봉으로 볼 것이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區廳에서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市에 質疑를 했습니다. 開發調整委員會에서 주신 2부, 7부능선이 서로가 기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럴 경우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建議를 했습니다.

그래서 90年 8月末로 기억합니다. 다시 市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하되 승인권자인 區廳長이 판단 처리하라 상당히 애매한 얘기죠. 여하튼 간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案을 만들어 가지고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심의위원회도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올 것이 없어요. 아무튼 기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2부하고 7부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課長님 소견으로서 90年 8월에 어디가 2부능선이고 어디가 7부능선인가 여러 案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案 중에서 우리 特別委員會에서 이거다 지정을 해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73, 74번지는 2부능선으로 개발해야 된다. 동아일보 거기는 7부능선으로 개발하면 된다. 그러면 2부능선, 7부능선이 아마 課長님 말씀처럼 주봉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건덕빌라 뒤에 있는 산을 보고 할 것이냐 하는 決定을 우리 特別委員會에서 봤을 때 이거다 지적해 준다면 또 청원인들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許可가 날 수 있습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그 사항이 당시에 90年 8月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市에서 다시 한번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경관 보존대책인가 해서 다시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혹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새로운 지침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李憲九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피부에 느끼는 것인데 일개 課長이 바뀌고 區廳長이 바뀐다고 해서 行政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몰라요. 장관이 바뀌고 장관 지침이 바뀐다면 이해가 되지만 말단 區廳의 行政이 區廳長이 바뀐다든지 課長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이런 行政이 나오면 곤란하죠. 정말 일하기 힘들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朴萬信 다음에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鄭鍾九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九委員 몇가지만, 접친 사항이 있더라도 먼저 住宅課長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特委에서 거론하는 곳이 대지는 몇 %며 田은 몇 %입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자료에 보니까 표시되어 있습니다.

○鄭鍾九委員 전부 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대지가 일부 있습니다.

○鄭鍾九委員 일부에 불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田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形質變更 許可申請이 가능합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그 상태, 다시 말해서 대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 내지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 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鄭鍾九委員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최소한도 20세대 이상은 事業承認을 얻어서 형질변경 許可를 가름하는데 맞습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그렇습니다.

○鄭鍾九委員 그러면 지금 대지는 적고 田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일반적으로 집을 20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建築法에 의한 建築許可를 得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형질변경을 요구할 때는 따라서 형질변경허가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는 형질변경 허가를 가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용 검토는 같이 해야 되겠죠.

○鄭鍾九委員 지금 請願人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아니죠. 20세대 이상을 짓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鄭鍾九委員 대지보다 田이 많지 않습니

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형질변경 허가를 가름하는 특혜가 있습니다.

○鄭鍾九委員 88年度에 건덕빌라 및 다른 고급주택도 받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여서 건축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현 住宅課에서 자료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안을 드리면 88年 8月 이전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입지심의 등을 市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市에 전달을 하고 市에서 審議를 해주고 그 結果에 따라서 區廳에서 이를 처리했고 88年度 이후에 區廳에서 입지심의를 하도록 업무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鄭鍾九委員 지금 課長님께서서는 사건으로 청원인들이 法적인 요건을 전부 구비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議會에 請願을 했다고 보십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이것은 사건이 아니고 住宅課長 공인의 입장에서 서류자체의 法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 다만 도시경관이 저해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法적인 요건은 맞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禹信 예, 玄孝善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孝善委員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課長님이 90年 11월에 가셨다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좀 묻겠습니다. 입지심의가 오면 순서대로 합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玄孝善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구기동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90年 1월에 市長님께서 순시를 하시면서 구기동 일대의 형질변경이나 建築許可를 할 때는 市에 사전에 자문을 받아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구기동 일대에 대해서는 市에 전달을 했어요. 평창동은 그 당시에 지시에 포함이 안돼 가지고 區廳 자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玄孝善委員 제가 알기로는 구기동이고 평창동이고 법정동은 같습니다. 행정동은 한 동네인데.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등산로 입구가 구기동이죠.

○玄孝善委員 89年度 먼저 들어온 것은 몇 개월씩 묶여있고 그것보다 2m도로도 안되는 평창 금강빌라는 그 후에 들어왔는데 許可가 났습니다.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기동 일대는 특수지역으로서 등산로 입구가 되고 여론의 질타를 맞고 하다 보니 市長님이 지역을 국한해서 구기동 일대에 대해서 해라 하는 바람에 이 案이 장기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玄孝善委員 89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90年 여름까지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90年 1월에 市長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規程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玄孝善委員 문제는 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들어온 것은 몇 개월씩 같고 앉아있고 89年 8월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89年 8월달에 들어왔죠?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예, 8月 달에 들어왔습니다.

○玄孝善委員 다시 보완해서 낸 것이 8月 말이죠? 처음에는 2月달에 넣었다가 여건이 안되니까 취하를 해가지고 30日날 다시 들어왔죠?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예, 그렇습니다.

○玄孝善委員 평창동 것은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기동 일대에 대한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玄孝善委員 그것은 90年度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그러니까 구기동 경우에 그렇게 상당한...

○**玄孝善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89年度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구기동은 종로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산공원과 직접 인접한 지역이고 또 공원이고 또 그 위는 그린벨트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의는 아니지만 新聞에 나오고 TV 또 여기에 따른 각 기관의 주목, 시선을 끌다보니까 市長님께서 부득이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玄孝善委員** 90年度를 보면 그런 문제는 안나왔습니다.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90年初입니다. 시장님 지시가, 구기동 일대는 그 전에 이미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年 1月 12日날 市長님이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전에 각종...

○**玄孝善委員** 91年度에 나온 게 아닙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90年입니다. 90年 1月初에 구기동 일대에 대한 특별지시가 내려졌어요. 그 바람에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玄孝善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89年度 8月 30日부터 접수해 가지고 3個月 4個月씩 묶습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서류가 되어가지고 형식적인 요건이 맞았겠습니까마는 각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보완이 물론 書面으로 표시가 안되었습니까마는 각 주관부서에서 신청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 계획도가 이상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등등해서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자체가 완벽한 상태에서 8月 말에 들어와 가지고 관계과의 협의를 거쳐서 관계과의 협의에 이상이 없었더라면 진행이 아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따른 관계과의 검토 결과 여러 가지 보완이 그때그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玄孝善委員**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 평창동 금강빌라는 말이죠. 거기 도로가 6m도로가 되어서 해줬습니까?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제가 전직으로 관계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형식적인 요건은 충분히 검토되고요...

○**玄孝善委員**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2m 도로가 안됩니다. 지금 지도를 갖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도로가 2m가 안되었습니다. 구유지를 내줘서 그걸 다 먹고 그 뒤 맹지를 만들어서 10억원씩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玄委員님 말씀은 의제하고 직접 저거하니까 나중에 이 사안과 직접...

○**玄孝善委員** 이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 계셨다고 하니까 도로 자체가 하자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가 2m가 안됩니다. 대안이 뭐냐? 국유지 내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생겼죠?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저희가 이런 얘기는 혹시 자기금지인지는 모르겠습니까마는 저희가 관계서류가 들어오면, 民營住宅事業計劃 입지심도가 들어오면 저희 주택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서류를 각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 토목과 하수과 관계부서의 협의를 전부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장이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玄孝善委員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직접...

○**玄孝善委員** 그것은 허가가 그때 났고 이것은 어떻게 8月 30日날 들어온 것이 年末까지 넘겨가지고 90年 1月달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완벽하질 않아가지고 중간중간 보완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禹信** 예, 金憲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시오.

○金憲中委員 저는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토의겸 질의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말이 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가 다음 24日날이 會議라고 했죠?

그러면 24日날로 미뤄가지고 거기 가서 전체 會議에서 통과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禹信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죠.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林臥龍委員님! 말씀하세요.

○林臥龍委員 지금 경과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區廳長이 알아서 하라고도 한번 내려왔다면서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달에 내려와서 입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완사항이 나와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臥龍委員 그래서 나는 내 상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그것이 89年度와 지금 현재와 법에는 하자가 없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법의 요건은 맞습니다.

○林臥龍委員 맞죠? 그러면 市하고 區하고 대화가 오고 간 것은 결과적으로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라 이것은 법이 아니라 말이에요.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말썽이 난 것 아니에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사업승인 자체가 법의 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주라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재량 판단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량에 속하는 것 중에 도시경관의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臥龍委員 아니죠.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行政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법이 나오든지 이 법은 몇년 몇월 몇일부로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포된다 말이에요. 國會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데 그런 舊基洞 몇부 능선까지 무슨

이것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법이 공포된 것도 없이 말이지 公務員들이 마스크에 나오니까 이것은 경관을 해쳐서는 안되니까 서로가 建築許可를 미룬거란 말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여론보다는 법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론이 시끄럽다 해도 법이 그렇지 않으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법을 어느 국민일부에만 저촉시키고 다른 사람한테는 저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 과거 89年度하고 지금하고 法에 저촉을 안 받으면 지금이라도 북한산 일대 어디까지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알가알부 해봤자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에서 3가지로 나왔으니까 그것하고 議會하고 일치가 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모양인데 여하튼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되고 깊이있는 건축관계는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간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판단도 나오고 또 우리 議會에서 議員들이 우리 의견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의견을 합쳐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金憲中委員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하루종일 해봐야 결론이 나오니까 24日에 가서 우선 법이 앞서야 하니까 법을 앞세워놓고 여론도 법이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이래서 이것은 건축허가 나간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아까 李憲九委員께서도 평창동 세검정 일대에 이와 흡사한 지역이 몇개나 되느냐 하니까 두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臥龍委員 아니 89年度에 접수해가지고 물론 반려한 것은 많지만 접수해서 처리된 것은 두 件밖에 없잖아요?

○前任住宅課長 朴銅雲 그렇죠. 이것이 처리되면, 예를 들어, 이어져 나올 수 있는...

○林臥龍委員 아니죠. 이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일단 반려가 되어서 다 결정된 사항이고 이것은 진행 중인 것 아니

예요? 이 두건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 그것은 다음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불만,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여론을 무마시켜야지 무조건 신문에서 때린다고 법을 집행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朴禹信 예, 李憲九委員 말씀하세요.

○李憲九委員 장시간 질의 답변하느라 피곤한데 停會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禹信 한 20분간 停會할까요?

(「중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40分 會議中止)

(16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禹信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사실은 연일 우리 委員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課長님들 고생하시고 좀더 深思熟考하게 연구도 하고 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좀더 심도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06分 散會)

○關係公務員

住 宅 課 長	韓 吉 洙
前 任 住 宅 課 長	朴 銅 雲

○出席委員 8名

朴 禹 信	李 炯 述	李 憲 九
玄 孝 善	李 萬 魯	鄭 鍾 九
林 臥 龍	金 憲 中	

[The page contain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document. The text is too light to transcribe accurately.]